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5363429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2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 및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2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9,151,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20. 9. 28.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간 2025. 9.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20. 11. 2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2021. 11. 9. 중소기업은행에 19,151,58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0.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 12. 17.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A은 2021. 11. 18. 청주지방법원 2021개회6813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6. 2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 A은 202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다.

바. 이 법원은 2023. 3. 23. 피고 A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2023. 4. 7.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다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19,151,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확정될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법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A에 대한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피고 A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의기간 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위 채권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2021. 12. 17. 피고 B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6. 28.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고 A(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이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 및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